

검 토 보 고 서

안 건 명	부서명	페이지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무2과	1

(2014. 2. 28)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이진표]

1. 안 건 명

가.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가. 제출일자 : 2014년 2월 17일

나.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3. 의안 회부일자

가. 2014년 2월 19일

나. 의안번호 : 14-16

4.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5.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개정·공포(2012. 9. 22)됨에 따라 수수료 종류가 27종목이 추가되어 현행 155종목에서 182종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일부개정

6. 주요 내용

가.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변경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표준금액 반영

(총 21건 : 인상 1건, 인하 14건, 신설 6건)

나. 수수료 감면 대상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안 제6조제1항)

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검토결과]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개정·공포(2012. 9. 22)되어 수수료의 종류가 155종목에서 27종목이 추가된 총 182종목으로 확대됨에 따라,
- 현재 「서울특별시 마포구 수수료징수 조례」로 시행하고 있는 수수료 66종목 중 대통령령에서 정한 금액과 상이한 수수료 15종목을 변경(인상 1, 인하 14)하고 6종목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도록 표준 수수료를 변경하였고, 기타 한글맞춤법 띄어쓰기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참고사항]

○ 수수료 변경 내역

총 계	문화관광과			의약과
	계	인 하	신 설	인 상
21	20	14	6	1

○ 자치구 개정 현황 (2013년 12월 31일 현재)

가. 개정 완료 : 20개구

나. 개정 진행중인 구 : 5개구

관계법령 및 근거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3.21>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4>

제2조(수수료의 징수기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이란 별표에서 정한 금액을 말한다.[전문개정 2012.9.21]

부칙 <대통령령 제24111호, 2012.9.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수료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조례가 법 제139조제1항 단서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가 제정되거나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 그 수수료는 별표의 개정규정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신·구대비표

구분/종목	단위	수수료액 전	수수료액 후	비고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66종	72종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공연장업 등록 신청	1건	50,000원	10,000원	인하
(2) 공연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25,000원	5,000원	“
(3)~(4) (생략)				
(5)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신청	1건	60,000원	50,000원	“
(6) 일반유원시설업 변경허가신청	1건	30,000원	15,000원	“
(7)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1건	30,000원	20,000원	“
(8)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 신청	1건	15,000원	5,000원	“
(9)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신청	1건	30,000원	20,000원	“
(10) 복합유통게임제공업변경등록 신청	1건	15,000원	5,000원	“
(11) (생략)				
(12)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원	5,000원	“
(13) (생략)				
(14)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원	5,000원	“
(15) (생략)				
(16)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원	5,000원	“
(17) (생략)				
(18)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10,000원	5,000원	“
(19) (생략)				
(20)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10,000원	5,000원	“
(21)~(30) (생략)				
(31)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1건		20,000원	신설
(32) 영화상영관 변경등록신청	1건		10,000원	신설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생략)				
(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 신고	1건	10,000원	5,000원	인하
(3)~(23) (생략)				
(24)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및 양도·양수신고	1건	2,000원	10,000원	인상
(25)~(36) (생략)				
(37) 영화업 신규 신고	1건		20,000원	신설
(38) 영화업 변경 신고	1건		10,000원	신설
(39)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1건		5,000원	신설
(40)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1건		4,000원	신설

표준금액과 동일하게 조정시 세입 증감(예상)현황

(단위 : 건,원)

연 번	수수료 명	개정내용	발급건수		세입증감 (예상)액
			'12 년	'13 년	
	계		108	109	△936,000원
①	공연장업 등록 신청 수수료	50,000원 ⇒ 10,000원	8	8	△320,000원
②	공연장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25,000원 ⇒ 5,000원	2	4	△80,000원
③	일반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수수료	60,000원 ⇒ 50,000원	0	0	-
④	일반유원시설업 변경 허가 신청 수수료	30,000원 ⇒ 15,000원	0	0	-
⑤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수수료	30,000원 ⇒ 20,000원	1	3	△30,000원
⑥	일반게임제공업 변경허가 신청 수수료	15,000원 ⇒ 5,000원	0	3	△30,000원
⑦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신청 수수료	30,000원 ⇒ 20,000원	0	0	-
⑧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5,000원 ⇒ 5,000원	1	0	-
⑨	청소년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0,000원 ⇒ 5,000원	1	1	△5,000원
⑩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수수료	10,000원 ⇒ 5,000원	15	17	△85,000원
⑪	게임제작업 또는 배급업 변경등록신청 수수료	10,000원 ⇒ 5,000원	31	30	△150,000원
⑫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 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5,000원 ⇒ 5,000원	0	0	
⑬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 신고 수수료	10,000원 ⇒ 5,000원	1	1	△5,000원
⑭	노래연습장업등록사항 변경신청 수수료	10,000원 ⇒ 5,000원	45	35	△175,000원
⑮	치과기공소 인정신청 및 양도·양수 신고 수수료	2,000원 ⇒ 10,000원	3	7	56,000원